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협조

1. 귀 기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3.4.18.)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축의 소유자 등)가 소유·임차한 차량(화물차 또는 승용·승합차)이 농장을 출입하는 경우 시설출입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다만,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형 여건상 농장 외부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 등록대상 차량에서 제외되나,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에 따라 주차증을 발급 받은 경우 농장 출입이 가능(붙임 지침 참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시설출입차량(제20조의3제1항)**

19. 가축의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 가. 일시적으로 축산관계시설 내부로 출입하기 위한 차량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출입을 허용하는 표시를 부여받고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한 차량
  - 나. 축산관계시설의 지형여건상 축산관계시설 외부에 주차하기 어렵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로서 가축사육시설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축산관계시설 내부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

3. 이와 관련,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 예외규정 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기관(협회)에서는 소속 축산농가 등에게 안내하여 동 지침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홍보물안을 보내드리니 홈페이지 게시 및 소속 축산농가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해당 지자체에 차량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 1부.  
2.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홍보물(안) 1매. 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농협중앙회(축산경제), 농협중앙회(축산물위생교육원), 농협중앙회(축산유통부), 농협중앙회(축산지원부), 대한수의사회, 대한양계협회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사)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한국가금수의사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한국메추리산업연합회,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사)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

주무관 **채진욱** 사무관 **한명관** 조류인플루엔자 전결 2023.9.27.  
지방역과장 **김용상**

협조자

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 9. 27.) 접수  
6795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25 팩스번호 044-868-9210 / [jinuk94@korea.kr](mailto:jinuk94@korea.kr) / 비공개(5)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